

플랫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 수 곤 · 남 궁 술

플랫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 수 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술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요약문

S U M M A R Y

- 현재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사업들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임
- 플랫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활동을 개발하고 있으나 실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활동과 경쟁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적인 행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개발함으로써 사업자 상호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음. 아울러, 공급업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강화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보장이 약화되기도 함
- 뿐만 아니라, 위법한 콘텐츠의 유포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각국에서의 개념정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공통적인 개념정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일반법에 의한 규제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이 디지털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입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다수라고 할 것임
- 따라서 플랫폼을 통한 연계나 연결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또는 ‘콘텐츠의 공유’(기반콘텐츠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규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콘텐츠 플랫폼은 콘텐츠의 내용검열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이 발견됨.
아울러, 비록 일부 공급자는 플랫폼에 통합되어 그 특성을 상실하기도 하나, 플랫폼 덕분에 활동이 가능하게 된 공급업체는 기존의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도 함.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이 확보될 필요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 법에서는 플랫폼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업계의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의 입법례 중 일부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업계의 영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사정이 발견되며, 대표적으로는 유럽에서의 사례가 그러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유럽에서의 움직임은 미국계 플랫폼의 진입에 대한 경제심리에서 촉발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미국계 플랫폼과 비교하여 역량이 크게 뒤처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논의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비교적 최근의 카카오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며, 유럽에서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아울러, 이와 같은 규제수단들이 혁신적 신산업의 개발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도미니크 공화국에서의 정부태도와 같이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방임할 필요도 없을 것임

목차

CONTENTS

플랫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 플랫폼의 의의와 구별개념	07
1. 플랫폼이라는 개념 정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존재하는가?	07
2. 개념의 모호성과 각 국가의 채택	08
3. 플랫폼 개념 정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3가지 요소	09
II. 플랫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11
1. 플랫폼의 분열적 효과	11
2. 문제의 노정	12
III. 플랫폼에 관한 법 정책	13
1. 전환기적 상황	13
2.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 배경과 각국의 법 정책	13
IV. 플랫폼을 둘러싼 이중적 과제	15
1. 문제의 소재 : 플랫폼의 창의성 결여와 역동성	15
2. 인적 연결	15
3. 기반 서비스에의 참여 : 단순하지 않은 중개자	25
V. 결론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35
1. 종합적 결론	35
2. 우리 법에의 시사점	35

I.

플랫폼의 의의와 구별개념

1. 플랫폼이라는 개념 정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존재하는가?

- 한국은 현행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에서 금융플랫폼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유일함.¹ 따라서 각국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플랫폼’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단일한 의미로서 세계 각국이 공유하고 있는 법적 정의의 도출은 힘든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우선, 다양한 국가의 법률들에서 플랫폼이라는 해당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 환언하면,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때로는 이보다 더 좁거나 넓은 의미를 가지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법령을 비교할 경우, 각 국가들에서 포섭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개념정의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한 나라의 법체계 내에서도,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법령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정이 발견됨.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경제학, 경영학 등)에서 이해하고 있음

* 이 글은 2022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Henri Capitant 학회 세계대회에서의 각국의 법제에 대한 발표내용을 분석하여 요약한 것임

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는 플랫폼의 개념 또한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음

2. 개념의 모호성과 각 국가의 채택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플랫폼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는 하나, 적어도 각국에서 이해하는 플랫폼의 개념과 관련한 공통점은 발견할 수 있음. 즉, 플랫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의 공유가 발견됨

- 엄격한 의미에서의 플랫폼의 개념은 “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② ‘콘텐츠의 공유’를 목적으로 디지털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연계되는 활동 또는 연결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종종 문제들을 야기하는 ‘OS 또는 클라우드’²와 같은 ‘혁신플랫폼(plateformes d’innovation)’이 아니라, Cusumano, Gawer, Yoffie가 ‘거래플랫폼(plateformes de transaction)’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였던 대상들을 포함함³
-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의 플랫폼에 대한 개념 정의는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effets de réseau)’를 강조하지는 않음. 즉, 플랫폼에 새로이 참가하는 모든 자들이 다른 자들을 위하여 플랫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임
- 환언하면,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실제로 무엇인가의 구성적 요소라기보다는 일종의 특성이나 특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⁴

² 상호 보완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운영시스템 또는 클라우드시스템)를 생성할 수 있는 회사 및 생태계의 파트너가 공유하는 일련의 기술모듈(Ensemble de modules technologiques partagés par l’entreprise et les partenaires de son écosystème à partir desquels on peut créer des produits ou des services complémentaires (systèmes d’exploitation ou de cloud))

³ Michael A. Cusumano, Annabelle Gawer, David B. Yoffie, “The Business of Platforms: Strategy in the Age of Digital Competition, Innovation, and Power”, *The Business of Platforms*, 2019. 이들 플랫폼은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공유플랫폼에 포함됨.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이용자들은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언어의 편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음

⁴ 다만, 경쟁법의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고려의 대상일 수도 있을 것임

3. 플랫폼 개념 정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3가지 요소

- 우선, 플랫폼을 통한 ‘연결’ 또는 ‘연계’는 적어도 ‘적극적 접근’을 전제로 하여야 함.⁵ 즉, 플랫폼은 이용자 등의 연결에 있어서 스스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것임. 예컨대 물리적 세계에서, 주말 시장을 운영하는 회사에게 주말마다 공공 공간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운영 자체에 대해 적극적 관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그리고 만약 모든 플랫폼이 개입과 관련한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 연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해당 플랫폼은 ‘호스트의 지위(statut d’hébergeur)’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임
- 다음으로, 플랫폼은 ‘디지털의 방식(par voie numérique)’을 통한 연결활동을 수행함. 물리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행위나 활동은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행위와 동일시 될 수 있음. 즉, 디지털의 방식 또는 디지털의 채널이 개념정의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물리적 세계에서도 플랫폼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다중 브랜드 유통업체가 플랫폼과 같이 활동한다고 간주하기도 함
 - 그러나 법률분야에서는, 플랫폼이 특별법이나 특별한 원칙에 의한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플랫폼이 디지털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통한 연결 또는 연계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또는 ‘콘텐츠의 공유’(기반콘텐츠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즉,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제활동도 플랫폼의 활동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플랫폼은 모든 종류의 재화(상품, 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한 교환 또는 공유를 허용함

⁵ “A platform is an entity that brings together economic agents and actively manages network effects between them”, P. Belleflamme & M. Peitz, *The Economics of Platfor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II.

플랫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플랫폼의 분열적 효과

○ 플랫폼은 분열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존 사업자와 신 사업자 사이의 분열

- 플랫폼의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운송업이나 임대숙박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의 하나를 예로 들 수 있음. 즉, 플랫폼을 통하여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사업을 개발하였으나,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유사 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통적인 행위자들 또는 기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하여 새로이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들 상호간의 분열 현상이 야기될 수 있음⁶

○ 공급업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의 강화

- 독점 또는 과점 플랫폼의 출현으로 인하여 다수의 공급업자들이 소수의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⁶ 즉, 전통적 행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저항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한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였음. ①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기존 택시기사들의 저항, ② “로톡”의 변호사 연계 서비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광고 금지와 징계, ③ 의약품 구입 플랫폼인 “닥터나우” 및 미용의료정보플랫폼인 “강남언니”에 대한 서울시 의사회 등의 소송 제기, ④ 부동산 중개 플랫폼(프롭테크)인 “다원중개”에 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명목의 고발 등.

- 운송업자나 차량의 운전자와 같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황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업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게 됨

○ 이용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경감

-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익명의 사업자가 예컨대,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발됨으로 인하여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약화될 수 있음

○ 위법한 콘텐츠의 유포 가능성

- 공급자가 익명화되거나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불법적인 콘텐츠의 유포가 가속화될 수 있음
- 특히, 증오적 표현이나 위·변조 및 모조품의 유통이 증가될 수 있음

2. 문제의 노정

○ 플랫폼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는 해결하여야 할 다양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 우선, 기반 서비스(service sous-jacent)에의 접근이나 실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는 경우,⁷ 플랫폼도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 플랫폼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유로 플랫폼이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 기반 서비스 공급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들을 플랫폼을 통한 신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들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수혜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기반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기반서비스의 성실한 이행에 관하여 보증인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의 여부
- 현재 유럽연합이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수익에 대한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⁷ 여기에는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들에게 과세규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III.

플랫폼에 관한 법 정책

1. 전환기적 상황

- 종래 플랫폼은 순조로운 방향으로 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즉, 공급자 상호간의 경쟁을 자극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가격의 인하와 서비스의 개선을 촉발하였음. 아울러,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유발하였음
- 오늘날에는 플랫폼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모습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플랫폼을 통한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⁸

2.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 배경과 각국의 법 정책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에 관한 입법의 배경에는 플랫폼에 대한 불신, 특히 미국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음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특정 영역에 관하여 관련 입법을 하거나 일정한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⁸ Michael A. Cusumano, Annabelle Gawer, David B. Yoffie, “The Business of Platforms: Strategy in the Age of Digital Competition, Innovation, and Power”, *The Business of Platforms*, 2019. 특히, 2017년에는 뉴욕타임즈가 이미 GAFAM (오늘날에는 MAAMA)에 대해 ‘Frightful Fives’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음

○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다양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법원의 과감한 판단이 내려지기도 함.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으로는 ① 일반적 이익 또는 공익, ② 기반서비스 제공자의 이익, ③ 기반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④ 행위자들의 이익, ⑤ 제3자의 이익을 들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이익들이 언제나 수렴되는 것은 아님. 예컨대, 터키에서의 Booking.com의 활동 중단은 여행사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으나 많은 숙박업자들의 불만을 자아낸 바 있음
- 일반적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한 입법의 사례로는 독일에서의 「Airbnb」법률을 들 수 있음
- 전통적 행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예시로는 독일에서의 「Uber」법 및 한국에서의 「반-타다」법률을 들 수 있음
-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예시로는 ①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2018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라든가, ② 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2019년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③ “관광 목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이익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2019년의 브라질 고등법원의 판결⁹을 들 수 있음

○ 한편, 유럽연합 내에서 룩셈부르크는 이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 즉, 유럽연합의 법률에 따른 입법을 제외하고, 룩셈부르크는 플랫폼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많은 플랫폼 사업자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마존은 룩셈부르크에서 8번째로 큰 고용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아무튼, 현 정부의 연정 협정에서는 “공유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어 Uber, Airbnb)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 및 이들 기업의 근로자 보호를 포함하여 생태적, 사회적 표준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상황은 변할 수 있음¹⁰
- 또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공화국 대통령이 “(i) 새로운 정보 및 통신 기술에 기반한 활동의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ii) 디지털 소셜 네트워크 및 인터넷 상에서의, 비공식적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선언하였음. 요컨대, 그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무규제, 무제한, 무과세를 천명한 것임

⁹ RECURSO ESPECIAL No 1.819.075 - RS (2019/0060633-3).

¹⁰ 이에 대해서는, <https://gouvernement.lu/dam-assets/fr/publications/accord-coalition/2018-2023/Accord-de-coalition-2018-2023.pdf>.

IV.

플랫폼을 둘러싼 이중적 과제

1. 문제의 소재 : 플랫폼의 창의성 결여와 역동성

○ 플랫폼의 창의성 결여

- 플랫폼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개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플랫폼은 창의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즉, 플랫폼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에 있음
- 플랫폼은 기존의 것들을 모든 면에서 바꾸었다는 점에서 역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즉, 플랫폼은 기반서비스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결고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국경 없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하에서는 플랫폼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① 인적 연결과 ② 기반 서비스에의 참여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

2. 인적 연결

○ 플랫폼은 상품 및 서비스 유통이나 콘텐츠의 공유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연결함

-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일종의 하이브리드에 해당함. 예컨대, 유통 플랫폼에서도 ‘고객의 소리’와 같은 콘텐츠를 공유하기도 함
- 따라서 플랫폼 자체를 구분하기 보다는 플랫폼의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즉, 플랫폼의 활동이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지(A) 아니면 콘텐츠의 공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지(B)에 따라 플랫폼의 유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A.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1) 플랫폼과 기반 서비스 공급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관계

-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활동은 두 종류의 관계 구별을 필요하게 함 : 구체적으로는 플랫폼과 기반 서비스 공급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구별하는 한편, 기반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중개(courtage)

- 대부분의 보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유통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중개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프랑스¹¹와 룩셈부르크¹²를 포함한 다수의 법원의 결정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한편, 중개의 성질결정은 유용성이 크지 않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중개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에 관한 규정은 많지 않기 때문임.¹³ 즉, 중개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중개나 혼인중개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역별로 나누어 적용될 수 있는 규칙들이 정해져 있음
- 따라서 중개에 대한 규제는 기본계약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보험중개와 혼인중개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지는 않음.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플랫폼을 특별히 규제하는 대부분의 규칙들이 영역별로 정해져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 부합 중개(courtage d'adhésion)

- 플랫폼과 기반 서비스 공급자/이용자 간의 관계는 플랫폼의 일반 이용 약관에 기반하고 전자적으로 체결되는 부합계약(contrat d'adhésion)¹⁴의 적용을 받게 됨
- 대부분의 경우, 국내법에서는 일반적 보호에 관한 규칙들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규칙들이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들이 다수임. 즉, 민법상의 규정이나 BtoC 및 BtoB 사이의 불공정한 활동에 관한 규제들이 플랫폼에서의 활동에 대한 규제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다수라는 것임
-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의 특정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함
- 즉, 기반 서비스 공급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의 법률에서 시장 집중 및 플랫폼의 불가피한

¹¹ Cass. civ. 1^e, 19 février 2013, n° 11-23287

¹² TA Lux., ordonnance, 15 juillet 2019, n° 1007/09

¹³ 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민법전과 상법전에서 10여 개의 조문을 할애하여 중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¹⁴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프랑스에서는 ‘부합계약’이라 칭함

특성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공급자의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한 특수한 규칙들이 입법되었음

- 기반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다수 국가의 법률에서 플랫폼 활동의 정확한 특성 및 공급자의 신원과 관련하여 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특수한 규칙들이 입법되었음

a) 기반 서비스 공급자 보호

① 기반 서비스 공급자의 보호와 통상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

○ 많은 국가에서는 통상의 플랫폼이 공급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들을 도입하였음

○ 우선, 유럽연합(EU)에서는 2019년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사용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촉진 규칙¹⁵(소위, Platform to Business)’을 제정하여, 플랫폼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 특정 정보 (특히 분류 방법 및 고객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관한)를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된 일반 약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급자에게 보장할 것 ;
-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며 대심 절차를 거칠 것 ;
- 내부 민원 처리 시스템 및 중재 시스템을 제공할 것 (다만, 소기업이 있는 플랫폼은 제외함)

② 기반 서비스 공급자의 보호와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 일부 국가에서는 ‘거대 플랫폼 업체’에 대한 보다 강제적인 조치가 채택되었음

○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통해 게이트키퍼(gatekeepers)로부터 공급자들의 보호를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사전(事前)에 게이트키퍼의 지위를 부여하며, 게이트키퍼는 ‘성실 요구’(l’exigence de loyauté)나 ‘시장의 경합성 목적’(l’objectif de contestabilité du marché)에 해당하는 의무를 부담함

¹⁵ Règlement 2019/1150 du 20 juin 2019 promouvant l’équité et la transparence pour les entreprises utilisatrices de services d’intermédiation en ligne.

- ‘성실 요구’의 예 : 관련 기업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데이터의 활용 금지, 자신의 활동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를 관련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시장의 경합성 목적’의 예 : 순위 지정에 있어서의 자사우대행위(l’auto-préférence)의 금지, 게이트키퍼가 제공한 프로그램과 앱(App.)의 제거 가능성, ‘메시지 제공 업체’(les services de messagerie)들 간의 상호호환성 등을 들 수 있음
- 집행위원회의 제재 권한
- 회원국의 관할기관(Autorités Nationales Compétentes de l’Etats membres)은 단지 조사 단계에만 개입함
 - DMA 규정에 대한 조직적 위반의 가정
 - 연 매출액의 10%(누범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 일정 기간 다른 기업의 인수 금지 및 행태적 또는 구조적 교정 조치 부과

○ 일본의 경우, 거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공급자들의 보호는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률」(TFDPA 2020)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

- 일본에서도 해당 플랫폼은 경제부(경제성)에 의해 사전에 정해짐 : 현재까지 5개의 플랫폼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음(Amazon, Rakuten, Yahoo, Apple Inc. iTunes, Google LLC)
- 위 법률은 해당 플랫폼 업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 약관 변경의 경우에 사전 예고를 할 것, 이용자들로부터 취득한 데이터의 활용 조건을 공표할 것, 공정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것, 세무 상의 각 이행에 관한 채택 조치를 명시한 자체 평가서를 제출할 것 등
- 그 밖에 일본 경제부는 공급자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상담창구를 설치하였음. 이 창구는 주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함 : 플랫폼 업체에 대하여 이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것, 반복되는 문제들을 분별하는 것

③ 기반 서비스 공급자의 보호와 특수 플랫폼

○ 일부 플랫폼 업체의 특수 활동을 고려하여, 공급자 보호조치는 때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구성됨

- 프랑스에서는, 호텔 예약 플랫폼에서, 요금 동일 조항은 ‘여행법전’(Code du tourisme)이 금지하고 있음 : “숙박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그 성질이 무엇이든, 요금 상의 모든 할인이나 이득에 동의할 자유를

가진다.”¹⁶

b) 기반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 정보제공의 강화

○ 중개플랫폼 이용자의 보호는 특히 플랫폼 업체의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행해짐¹⁷

-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예 : 공급업자들의 분류 방식, 온라인 의견의 처리 방식 등)
- 이용자들은 누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아야 함 (플랫폼 업체인가? 아니면 제3자인가?)
- 이용자들은 기반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의무의 채무자에 관한 정보와 그 결과를 알아야 함

○ 각 국가의 규제 :

- 중국 : 「전자거래법」(2018)
- 유럽연합 : 소비자 권리에 관한 지침(2011)¹⁸,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불성실 상행위에 관한 지침(2005)¹⁹
- 프랑스 : 소비자법전
- 일본 :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률」(단 거대 플랫폼의 경우에만)
- 폴란드 : 여행 분야

○ 프랑스는 (매월 5백만이 넘는 방문을 관리하는) 거대 플랫폼에 관하여 특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들 플랫폼은 “명백성 의무, 투명성 의무, 성실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 상행위”를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함

¹⁶ Art. L.311-5-1 C. tour.

¹⁷ 플랫폼 업체가 숨겨진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보호는 더욱 엄격해짐

¹⁸ Directive relative aux droits des consommateurs (2011)

¹⁹ Directive relative aux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des entreprises vis-à-vis des consommateurs dans le marché intérieur (2005)

2) 공급자와 기반 서비스 이용자의 관계

a) 부합계약(*contrat d'adhésion*)인가의 여부

- 공급자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거쳐서 체결한 계약은 부합계약이라고 흔히 말함
- 그러나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플랫폼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이를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부합계약이라 말할 수 있는가?
 -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함 : 부합자는 누구인가? 계약상의 일정 조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당사자에게, 그가 그 조항의 작성과는 무관함에도, 불공정 조항으로 인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 불분명한 조항은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누구에 반하여 해석되어야 하는가?²⁰

b) 공급자의 자격

- 공급자가 사업자이고 이용자가 비사업자인 모든 경우에 소비자법이 적용됨
- 그러나 공급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려움이 있음 : 즉 공급자들의 일부를 분명한 사업자로, 그 외의 자들을 비사업자로만 분류한다면, 플랫폼에서의 활동이 본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 못지않은 활동을 하는 자(prosumer)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가 문제 됨
 - 브라질에서는, 판례에 의하면 거래량의 빈도에 따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결정된다고 함²¹
 - 유럽연합²²과 일본의 경우, 단서결합기술(*la technique du faisceau d'indices*)²³이 원용됨

²⁰ Cf. Cass, civ, 1^{re}, 3 févr. 2011, 08-14.402

²¹ Recours spécial 1654221/SP, Troisième Chambre, jugé le 22/10/2019, Dje 28/10/2019 ; Recours spécial 1880344/SP, Troisième Chambre, jugé le 09/03/2021.

²² Orientations concernant l'interprétation et l'application de la directive 2005/29/CE relative aux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des entreprises vis-à-vis des consommateurs dans le marché intérieur, Communication intitulée « Un agenda européen pour l'Economie collaborative » (2016) ; CJ, Kamenova(2018)

²³ ‘단서결합기술’이란 관련된 모든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술을 말함(Un faisceau d'indices est un ensemble d'indices qui, par leur convergence, permettent de prouver un fait juridique ou un acte juridique. La convergence des différents éléments du faisceau accrédite l'existence de ce que l'on veut démontrer. Et l'on en voit ici tout l'intérêt pour le juriste : le faisceau d'indices concordants permet d'approcher la vérité lorsque celle-ci n'apparaît pas clairement ou ne peut être constatée de façon flagrante. En l'absence de flagrance, la concordance des différents éléments du faisceau est décisive. Car des indices discordants auraient du mal à constituer un faisceau crédible et on peinerait à leur attribuer une quelconque valeur probatoire.) <https://actu.dalloz-etudiant.fr/focus-sur/article/retour-sur-le-faisceau-dindices/h/19af01fdfae5dceec691f499d6aaa21.html> 참조

○ 유럽사법재판소(CJ)는, 플랫폼에서 신제품과 중고품 8개의 판매를 제안했던 한 사람에 관한 Kamenova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²⁴

- 유럽사법재판소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청약을 하나의 플랫폼에 공지하고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그를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법관으로 하여금 ‘단서결합’을 원용하고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가 조직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의 여부, 이 판매가 영리 목적을 가졌는지의 여부,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물에 관한 정보와 기술적 역량을 가졌는지(소비자라면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음)의 여부, 판매자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졌는지의 여부, 어떠한 기준에서 온라인 매매가 판매자의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과 연계되는지,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특정 사업자의 명의로 또는 그의 이익으로 또는 그의 이름과 이익으로 나서는 다른 사람의 중개를 통해 활동하는 판매자가 수당이나 이익분배를 받는지의 여부, 판매자가 재판매의 목적으로 신제품 내지 중고품을 구입하는지의 여부, 즉 그의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규칙적이고 다발적으로 또는 수시로 행하는지를 살피면서, 판매되는 제조물이 모두 동일 물품인지 또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지의 여부, 특히 판매 제안이 제한된 수의 제조물에 집중되었는지의 여부 등

B. 콘텐츠 공유

1)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 콘텐츠 공유는 플랫폼의 주된 기능으로서 하나의 공동체, 네트워크(사회적 네트워크)를 창설하는데 기여하며, 부수적으로는 (고객의 의견을 공개하면서) 유통 활동에도 기여함

○ 이 콘텐츠에 관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사항에 따름 ;

- 원칙상 플랫폼의 의사
- 또는 법률

a) 플랫폼의 역할 : 플랫폼 자신에 의한 결정

① 호스트 역할

- 본래 플랫폼의 역할은 플랫폼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임
- 소극적 역할로서 플랫폼은 호스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경감된 책임을 부담 :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함(notice and takedown)
 - 콜롬비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음의 사항을 적시함 : “중개 인터넷은 이용자들에 의해 공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책임을 설정하는 것은 사상의 전파를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권한을 플랫폼에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²⁵

○ 호스트로서의 플랫폼의 지위

- 유럽연합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 온라인 시장에서의 일정 영역의 경영자가 관련 판매에 관한 청약의 제시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력자를 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약에 관한 데이터의 지식 또는 통제권을 그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그 경영자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²⁶

②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 의사(意思)

- 프랑스는 다음의 플랫폼에 호스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해당 플랫폼은 콘텐츠 통제 의무를 부담함
 - Ebay : 네트워크 밖에서의 재판매 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파기원, 2012)
 - Airbnb : 재임대의 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민사지방법원, 2020),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의 성질을 인정함(후술)

²⁵ SU420/19, <https://www.corteconstitucional.gov.co/relatoria/2019/SU420-19.htm>

²⁶ CJ, *Ebay*(2011), v. déjà CJ, *Google*(2010)

○ 호스트의 책임 요건

- 유럽연합 : 전자상거래 지침(2000)은 호스트가 콘텐츠의 불법성을 알고 있고 신속히 이를 제거하려 하지 않거나 접근 차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호스트에게 부과함
 - 이 지침은 또한 법관이나 행정기관에게 호스트로 하여금 이러한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브라질 : 「Marco civil da Internet 법률」(2014)은 다음의 두 경우를 구분함 :
 - 첫 번째 경우 :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와 주어진 기간 내에서 법관의 결정으로 불법으로 정한 콘텐츠를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콘텐츠 작성자가 이용 불가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고 관련 공급업체와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공급자’의 책임을 인정함²⁷
 - 두 번째 경우 : 과도한 노출 또는 성행위에 관한 요소를 포함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공급자’가, 참여자로부터 그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에,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 그의 책임을 인정함²⁸
- 튜르키예 : 「인터넷 방송 규제 및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2007)은 모두 법관의 결정을 전제로 하는 4개의 절차²⁹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다음에 따라 구별됨
 - 이들 절차는 형사소송에 부수적으로 시행되거나 단독으로 시행됨
 - 액세스 차단 또는 콘텐츠 제거를 정당화하는 관련 이익이 있을 것
 - 법관, 검사, 정보통신기술청, 장관, 대통령 또는 누구든지 이들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법원의 결정에는 항소 가능함 / 모든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플랫폼은 형사 책임을 부담함

²⁷ 동법 제19조와 제20조

²⁸ 동법 제21조

²⁹ 제8조, 제8조A, 제9조, 제9조A

b) 플랫폼의 역할 : 법률에 의한 결정

① 책임의 강화

○ 예외적으로, 플랫폼이 호스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플랫폼의 책임 경감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가 있음

○ 첫 번째 예로, 유럽연합은 저작권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음

-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침(2019)³⁰은 이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인 작품들이 존재하는 플랫폼은 ‘대중과의 소통’ 행위를 실현하며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호스트들의 책임 경감이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음(CJ, YouTube et Cyando(2021)³¹)
-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보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무런 승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플랫폼은 대중과의 승인되지 않은 소통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다만 플랫폼은 승인을 얻기 위해 그리고 저작물의 비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두 번째 예로, 유럽연합에는 아동 포르노 및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혐오스럽거나 충격적인 일정 콘텐츠에 대한 특칙이 있음 :

- 아동의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에 대한 지침 2011/93
-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지침 2017/541
- 테러에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 방지에 관한 규정 2021/784

○ 세 번째 예로, 프랑스에서는 종오 또는 공격적인 언어에 대항하려는 시도가 위헌으로 선언되었음

³⁰ La Directive n° 2019/790 du 17 avril 2019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³¹ CJ, YouTube et Cyando, 22 juin 2021, la CJ (aff. 682/18 et 683/18) v. DJ, 23 mars 2010, Google/Vuitton, aff. 236-238/08 : 호스팅 활동은 “순전히 기술적이고 자동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며, 필연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고 통제도 못한다.” ; CJ, 12 juill. 2011, L'Oréal/eBay, aff. 324/09

- 「인터넷상의 증오성 콘텐츠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2020)³²은 일정 규모의 플랫폼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예: 인종, 종교,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등)로서 형사적 침해를 구성하는 일정한 언어로 구성된 모든 콘텐츠를, 일인 또는 수인에 의한 통지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

- 현법위원회는 2020년의 한 결정³³을 통해 이 조항이 DDHC³⁴ 제11조에 근거한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에 반한다고 선언함
 - "공공질서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 행사의 남용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목적은 정당함
 - 그러나 다음의 이유에서 불균형이 있었음 : (i) 플랫폼은 검토되어야 할 엄청난 양의 신고에 직면할 수 있음. 이 검토를 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ii) 검토는 법에 따라 기술적으로 행해져야 했으며, (iii) 응해야 하는 시간은 매우 짧았음
 -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부당한 언어의 삭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분석의 어려움과 제재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한 번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언어를 삭제할 수 있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음('과대평가'의 문제)

3. 기반 서비스에의 참여 : 단순하지 않은 중개자

- 플랫폼은 기반 서비스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음. 플랫폼은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상품의 소유자가 아님(Uber와 Airbnb는 어떠한 자동차도 주거용 건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플랫폼은 기반 서비스의 공급에 개입하기 때문에 단순한 중개업자가 아님
 - 플랫폼은 기반 서비스를 촉진하거나 활성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예 : 사람 수송 플랫폼)
 - 플랫폼은 중간 서비스에 추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예 : 배달 플랫폼)
 - 플랫폼은 중개 계약 당사자 중 일인의 적절한 이행을 이력저력한 방법으로 보장함(예 : 상품 판매 또는

³² La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2020)

³³ 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

³⁴ 1789년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부동산 임대를 위한 플랫폼)

○ 따라서 다음의 의문이 생김

-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는 실행과 관련하여 플랫폼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A)
- 기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계약상의 의무를 플랫폼이 보장해야 하는가? (B)
- 특정의 경우(특히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통합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C)

A.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는 실행과 관련한 플랫폼에 대한 제한

1) 기업경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

○ 기업경영의 자유가 절대적인 곳은 없음 : 일정 활동에 대한 접근과 실행이 규제됨

○ 문제는 플랫폼이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실행을 제어하는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첫 번째 예로, 한국의 「‘반-타다’ 법률」은 모빌리티 플랫폼에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운송업자가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함
- 두 번째 예로, 콜롬비아 산업통상자원부는 Uber를 단순한 중개업체가 아닌 운송업체로 보았고, Uber가 직업상의 접근 및 행사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함
- 세 번째 예로, 유럽연합 역내 시장의 특수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플랫폼이 다음 규칙들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정보사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그 제공을 관리하는 규칙(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2000)³⁵ ; 정보화 사회 서비스에 관한 기술 규정 및 규칙 분야에서의 정보제공 절차에 관한 지침(2015)³⁶), 즉 원격으로 전자적 수단에 의해 그리고 서비스 수령인의 개별 요청에 따라 통상 보수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
 -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실행을 제어하는 별도의 규칙(역내 시장의 서비스 지침(2006)³⁷)

³⁵ Directive sur le commerce électronique (2000)

³⁶ Directive prévoyant une procédure d'information dans le domaine des réglementations techniques et des règles relatives aux services de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2015)

³⁷ Directive relative aux services dans le marché intérieur, la Directive « Services » (2006)

- 원칙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보사회 서비스로서, 기반 서비스와는 구별됨³⁸
 - 따라서 원칙상, 분석 프레임은 전자상거래 지침에 의함
 - 그러나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함 : 국내법상 규칙의 EU법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문제인 경우, EU법은 단지 디지털 분야의 주체뿐만 아닌 관련 분야의 모든 주체들에게 공통되는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프레임은 관련 분야의 프레임에 의해야 함
- Star app Taxi 사례에서, 유럽사법재판소(CJ)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음. 즉 '배차'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의 일반적인 요구사항(택시와 고객 연결)은 :
 - 정보사회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운송 부문의 모든 주체와 관련됨
 -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은 서비스 지침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함(무선으로 수업을 전송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특정 전제 조건은 준수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음")
- 예외 :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하면, "중개 서비스가 다른 법적 자격에 따른 서비스를 주요 요소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 플랫폼 서비스는 정보사회 서비스로 취급될 수 없음³⁹
- Uber Espagne 와 Uber France 사례
 - 자신의 차량을 활용하는 비직업적 운전자와 시내에서의 이동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는, 원칙상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로 구성된 운송 서비스와 구별되는 서비스임
 - 그러나 Uber의 경우, 이 플랫폼은 도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창안했음
 -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운송 분야 서비스"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 Airbnb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 구조화된 숙박 장소 목록을 만드는 것은 Airbnb에서 관리하는 전자 플랫폼의 필수 기능임
 -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 많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숙박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것은 아님. 더욱이 Airbnb는 숙박 시설을 선택하지 않으며 가격을 정하거나 가격상한을 두지 않음
 -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그 기본 임대 서비스와 분리될 수 있는 중개 서비스의 존재를 유지함:

³⁸ CJ, 12 juillet 2011, *L’Oreal/eBay*, aff.324/09 ;CJ, 3 décembre 2020, *Star Taxi app*, aff.62/19

³⁹ CJ, 20 déc. 2017, aff.434/15, *Asociacion Profesional Elite Taxi (Uber Espagne)*; CJ, 10 avril 2018, aff.320/16, *Uber pop (Uber France)*; CJ, 19 déc. 2019, aff.390/18 *Airbnb* ;CJ, 3 déc. 2020, aff.62/19, *Star Taxi app*

Airbnb는 정보사회의 서비스를 제공함

○ 요컨대 EU에서 다음의 경우에 플랫폼 서비스는 기반 서비스와 분리될 수 없음

- (i) 기반 서비스의 존재가 플랫폼의 작업 결과인 경우
- (ii) 플랫폼이 기본계약의 필수 요소(예: 물건 및 가격)의 틀을 제공하는 경우

B. 기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계약상의 의무를 플랫폼이 보장하는 것

1) 자발적 이행보장 v. 강제적 이행보장

○ 플랫폼은 다양한 계약 기술(지급보증, 연대 채무자 등)을 사용하여 기본계약의 적절한 이행 보장을 원할 수 있음.

- 이는 많은 고객 대 고객 플랫폼(예: Airbnb, Blablacar)뿐만 아니라 회사 대 고객 플랫폼, 특히 공급업체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신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예: Amazon)에서의 일을 성사시킴
- 튜르키예에서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공공 기관으로부터 신뢰 스템프를 받음

○ 그러나 그러한 보증이 강제될 수 있는가?

- 플랫폼이 기반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강제될 수 있음(예: CJ, JP Uber)
- 이와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국가가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음. 플랫폼의 부담으로 기반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또는 그 외관에 따른 결과가 될 수 있음
- 첫 번째 예시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2018)은, 공급자가 사람과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기타 소비자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플랫폼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제38조)
- 두 번째 예시로, 포르투갈의 「플랫폼을 매개로 하지 않은 차량을 통한 개별 유상 승객 운송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2018)에 따르면 플랫폼 전자 장치의 운영자는 그 이용자에게 계약으로 인한 의무의 적시 이행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음
- 세 번째 예시로, 콜롬비아 산업통상청의 결의에 의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중개플랫폼은 실제로 있어서 제품의 공급자가 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함(Mercadolibre v. Rappi 사건)
- 네 번째 예시로, 유럽연합의 Watheler 판결(2016)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소비재의 판매 및 보증의

특정 측면에서 1999년 5월 25일 지침의 의미상 판매자의 개념에는 판매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인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개인을 대신하여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도 판매자로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⁴⁰

- 다섯째 예시로, 일본은 상품에 관한 온라인 구매 및 정보 산업에 관한 비강제 규칙(연성법)(경제 산업성 규칙)에 따라 플랫폼이 스스로 판매자인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방지하였고 구매자가 정당한 이유로 이를 착각한 경우에 그 중개로 체결된 판매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슈퍼마켓 코너에 관한 일본의 판례를 유추 적용한 것임)

C. 기반 서비스 공급자의 플랫폼으로의 통합

○ 문제점 :

- 플랫폼이 기반 서비스에 참여할 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이 의존하는 공급자에게는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 공급자는 근로자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특별한 자유가 있음
 - 반면에 대부분의 공급자는 변수가 많은 경제적 상황에 의존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 임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근로자인가 아니면 자영업자인가?
- 두 가지 선택이 여러 권리에 의해 주어짐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신분 인정(1)
 -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동자에게 임시 지위에 의한 일정한 보호 부여(2)

1) 급여를 받는 공급자 : 이중적 접근

- 여러 국가에서 플랫폼을 위해 작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플랫폼의 근로자로 간주됨
 - 특히 운송 또는 배달 플랫폼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로자 자신(유급 고용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

⁴⁰ CJ, 9 nov. 2016, Wathlet, aff. 149/15. “상품 판매 계약과 관련된 일부 측면에 관한 지침(2019)에서 플랫폼 제공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활동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행동하고 상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의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으로 행동하는 경우 이 지침에서의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지침에 의해 법적 규율이 일반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외관만 가지고 이 판례의 내용을 모든 경우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회원국은 이 지침상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플랫폼 판매자에게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는 해당 분야의 전통적 참여자(불공정한 조치 경쟁) 또는 비회사조직에 의하여 재평가 조치가 취해졌음

- 전통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함
- 그러나 일부의 입법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일정한 조건에서 근로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a) 전통적인 접근
 - a-1) 법적 종속성 내에서
 -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용은 단순한 경제적 의존이 아니라 법적 종속을 전제로 함
 - 플랫폼의 맥락에서 법적 종속은 어떻게 정의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됨
 - 원칙적으로 법적 종속성은 일반적인 내용과 다르게 정의하지는 않음
 - 첫 번째 예시로, 유럽연합 내에서는 노동법이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문제일지라도 최소한의 유럽 기준(근로시간 조정, 집단해고, 평등한 처우 등에 관한 지침)⁴¹이 작성되었음⁴²
 - 유럽사법재판소 (Yodel Delivery, 2020)⁴²: 노동 시간 조정의 특정 측면에 관한 지침(2003)의 의미 내에서 배달원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님
 - (i) 하청업체 또는 대체인력의 사용 여부
 - (ii) 그에게 제공된 다양한 작업의 수락 여부
 - (iii) 직접적인 경쟁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iv) 특정 조건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을 확정하는 것
 - 두 번째 예시로, 프랑스 파기원(2020, Uber)은 Uber가 운전자에게 지시를 한 뒤 그 이행을 확인하고 위

⁴¹ 로마조약(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제153조 참조

⁴² CJ, 21 fév. 2013, N. c/ Styrelsen for Videregående og Uddannelsessto, aff. 46/12

반 시에 제재 권한을 행사했을 때 Uber와 운전자 사이에 고용 계약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음⁴³

-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파기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
 - 운전자에게 Uber와 연결할 의무가 없고, 그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Uber와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제재가 없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자영업의 특징은 자신만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가격을 책정할 자유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이행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요소에 의해 결정됨
- 우루과이 판례에서도 같은 해법을 채택하였음⁴⁴
- 대조적으로, 브라질 대법원은 Uber와 운전자 사이의 소송에서 운전자가 일정을 정하고 승차를 수락하는 자율성이 있으므로 법적 종속성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음⁴⁵

a-2) 법적 종속을 넘어서

○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 개념에 특정 종속 근로자, 특히 특정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근로자의 개념이 확대되었음

⁴³ Cass. soc. 4 mars 2020, n° 19-13316, pub. 그러나 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로는 CA Lyon, 15 janvier 2021, n° 19/08056

⁴⁴ Tribunal de Apelaciones del Trabajo de 1^{er}. Turno, sentencia 89/2020

⁴⁵ Soc. 13 qvr. 2022, n° 20-14870, pub. ("플랫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조건에 따라 조직된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진 작업 수행"이라는 것과 "플랫폼이 택시 운전자가 작업지침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밝히고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원심 법원은 (i) 운전자가 차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ii) 임대 계약과 플랫폼 가입 계약이 결부되어 있고, (iii) GPS를 통해 회사는 실시간으로 각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시간 측면에서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분배를 수행하고 운전자 활동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으며, (iv) 회사는 운전자의 이름과 계정에 운행량을 정하였고 운행요금을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정하였으며 (v) 회사는 승객의 의견 제시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재를 할 권한을 가졌다고 설시함.); Com. 12 janv. 2022, n° 20-11139, pub. (택시 회사는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Transopcone 회사에 대하여 소제기를 하였는데, 특히 Transopcone 회사가 이용한 운전자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심은 고용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하였음: 택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Transopcone 회사가 운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만 청구서 발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으로 고객에게 청구하는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Transopcone 회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를 선택하지 않으며 활동 영역이나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운전자는 자유롭게 앱에 로그인할 수 있고 승객의 예약요청을 자유롭게 승낙할 수 있고 경로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유한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고 다른 플랫폼을 위해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이로써 그는 이러한 요소는 종속관계의 존재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해 택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음. 운전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얻은 고객과의 운행 시간 외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운전자는 차량에 영구적으로 위치하며, 연락을 받기 위해 차량에 있어야 하며, 운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는 유효한 '운행 명령'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자유롭게 서비스 이행 조건을 결정할 수 없고, 운행의 분배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운전자는 대부분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는 목적지를 알지 못하며 운행 시간과 노동의 일정을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운행 횟수와 보너스 조건이 부여되고 자신만의 승객을 탐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러한 서비스 계약에서 전통적인 제재를 뛰어넘는 엄격한 제재를 부여받으며, 그로 인해 이 서비스는 단순히 전산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모든 자유를 흡수하는 포괄적 운송서비스를 구성하며 운전자는 종속관계에 놓여 있음. 대법원은 원심이 운전자가 활동을 수행한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적 근거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함)

○ 첫 번째 사례 : 케벡주의 「노동기준법」(노동법의 주요 출처를 구성함)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를 위해 일하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지만 다른 한편 또한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계약의 근로자 당사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i) 그 사람이 결정한 방법에 따라 그 틀 내에서 결정된 노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 (ii) 계약 이행을 위해 그 사람이 선택한 재료, 장비, 원자재 또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 (iii) 이 계약의 이행 비용을 공제한 후 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 중 그에게 남아 있는 금액을 보수로서 보유하는 경우

○ 두 번째 사례 : 이탈리아의 「근로계약 규율에 관한 법령」(2015)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그 이행 방법이 위임인에 의하여 조직되는, 특히 서비스의 이행 방식이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플랫폼을 통해 구성되는 경우, 주로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의 형태를 취하는 협력 관계에 이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b) 혁신적 접근 : 노동계약의 추정

○ 일부 제도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넘어 경제적 의존성을 기반으로 한 고용 추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

○ 첫 번째 예시로 벨기에의 2006. 12. 27.자 법률(「근로관계의 본질에 관한 법률」)에서 민감한 경제 부문(건설, 감시, 청소, 운송, 농업 및 원예)에서 특정 기준의 절반 이상을 총족하는 경우 급여를 받는 근로로 추정함. 이 추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번복될 수 있음

○ 두 번째 예시로, 유럽연합의 플랫폼을 통한 근로에서의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2021) 초안⁴⁶에는 벨기에의 방안과 유사하지만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즉 급여 근로의 추정인데, 이 또한 국내법상 의미에서의 노동계약의 결여가 증명되면 번복될 수 있음

2) 임시 지위에 의해 보호되는 공급자 : 의존적인 독립자

○ 많은 국가에서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임시적 보호조치를 두고 있음

- 폴란드는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이나 폴란드 옴부즈만은 2021년 플랫폼 근로자 보호조치를

⁴⁶ Le projet de Directive relative à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cadre du travail via une plateforme (2021).

요청하였음

-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음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거나, 때로는 특정한 영역의 자유를 재설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도 함
- 첫 번째 경우에 그 조치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으로서의 계약의 성격을 재설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자유로 인하여 계약의 성격을 재설정하게 됨
- 첫 번째 예시로, 유럽연합의 플랫폼을 통한 근로에서의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2021) 초안은, 근로자가 자영업자이든 급여노동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플랫폼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의 "알고리즘 관리"와 관련된 특정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플랫폼은, 그 계정을 제한, 정지 또는 삭제하는 것에 관한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플랫폼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하거나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감시 및 의사 결정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됨
- 두 번째 예시로, 스페인에서는 입법자가 임시 지위를 설정함("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독립 근로자"를 위한 "거래"(2007))
 - 이러한 지위는 어떤 근로자가 그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특정 고객을 위해 일상적으로 자신이 직접 바로 주된 능력으로, 자신의 소득의 75%를 얻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인정됨.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i) 근로자가 급여도 없고 하청업체도 없이 자신이 직접 일을 수행하여야 함; (ii)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다른 조건에서 일하여야 함; (iii)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을 수행할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함; (iv) 근로자는 자신의 일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함; (v) 근로자는 자신의 활동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함
- 세 번째 예시로, 이탈리아의 「근로계약 규율에 관한 법령」(2015년)은 영역별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다음 내용을 결정하는 배달 플랫폼 부문의 근로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 기반을 제공함
 - 가격 및 계약 이행 조건의 결정;
 - 보수의 결정(이행된 배송 건수에만 기초할 수 없고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함);
 - 작업 중 사고 및 직업상 발생하는 병에 대한 의무 보험 가입의 결정;
 - 서면 계약에 대한 권리의 결정 등

- 네 번째 예시로,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영역별 접근 방식이라는 이중적 접근 방식이 채택됨
-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노동법전은 플랫폼이 스스로 급부(서비스)의 특성과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함; 작업 과정에서 또는 직업 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플랫폼이 부담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보장하여야 함)
 - 특히 모빌리티(운송 및 배송) 플랫폼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함;
 - 첫째, 운송법은 다음과 같은 정보 및 자유를 근로자에게 보다 많이 부여할 것을 요구함 : 목적지, 거리, 보장된 최저 가격에 대한 정보 ; 근로자가 서비스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수락할 자유 ; 다른 중개자 또는 근로자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유 ; 작업 도구, 근무 시간을 선택할 자유 ; 연결을 끊을 권리 등
 - 둘째, 노동법전은 모빌리티 플랫폼과 근로자들 사이에 사회적 대화 원칙을 확립함. 이를 위해 근로자의 대표와 플랫폼의 대표를 조직하고, 단체 협약 체결시 고용 플랫폼의 사회적 관계를 담당하는 행정청(ARPE)이라는 임시기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셋째, 노동법전은 사회적 책임의 틀에서 플랫폼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결정하고, 플랫폼 자신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까지를 정의하는 규약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러한 제도를 택함에 있어서 이슈는 이 규약이 ARPE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러한 내용이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데에 대하여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본래 노동계약을 정의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입법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인데, 이 제도는 플랫폼이 노동계약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사유로 이 제도는 헌법위원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음(2020)
- 루마니아는 여객 운송 부문에서 플랫폼이 운전자 고용을 회피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채택함. 즉, 프리랜서만이 플랫폼을 통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V.

결론 및 우리 법에의 시사점

1. 종합적 결론

- 플랫폼은 전통적인 경제를 흔들어 놓음
- 다음으로, 플랫폼 경제가 흔들릴 것인가?
 - 콘텐츠 플랫폼은 콘텐츠 내용검열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
 - 플랫폼 덕분에 활동이 가능하게 된 공급업체는 기존의 어려움에서 해방됨
 - 반대로 일부 공급자는 플랫폼에 통합되어 그 특성을 상실함
 - 기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인정을 받은 많은 플랫폼은 자신의 기업적 계획에는 다소 생소한 요구사항에도 응할 수 있어야 함

2. 우리 법에의 시사점

- 플랫폼에 대한 현재의 우리 법 상황
 - 현행 우리 법에서는 플랫폼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업계의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의 입법례 중 일부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업계의 영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사정이 발견되며, 대표적으로는 유럽에서의 사례가 그러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러한 유럽에서의 움직임은 미국계 플랫폼의 진입에 대한 견제심리에서 촉발될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미국계 플랫폼과 비교하여 역량이 크게 뒤처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논의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비교적 최근의 카카오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며, 유럽에서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규제수단들이 혁신적 신산업의 개발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도미니크 공화국에서의 정부태도와 같이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방임할 필요도 없을 것임

이슈페이퍼 22-21-②

플랫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9-11-92325-88-0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9 781192 325880

